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9. 20 선고 2021나329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9. 20 선고 2021나32903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9. 7 선고 2020가단3568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변재휘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현

담당변호사 장세영

변론 종결 2022. 7. 19.

판결 선고 2022. 9. 20.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9. 7. 선고 2020가단3568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C이 2019. 12. 10. 피고에게 한 제1심판결의 별지 기재 채권의 포기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에 대하여 임차권양도대금반환채권을 갖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확약서로써 그 채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재형

판사조영인

판사임세영